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6456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3. 26.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12. 취득세 64,270,830원, 지방교육세 8,333,250원, 농어촌특별세 1,391,660원의 부과처분 및 2019. 8. 28. 취득세 17,030,090원, 지방교육세 3,406,01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2. 30. 설립인가를 받고 B조합법에 따라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0. 31. [redacted]구 C 대 658.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층, 1층 내지 3층 각 322㎡, 4층 103.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9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점으로 사용예정인 1층 일부 면적 193.2㎡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에 따른 'B조합가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62,644,800원을 면제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목적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표준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2,180,38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쟁점 면적을 지점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쟁점 면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 2.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4,270,830원, 지방교육세 8,333,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91,66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일부와 2층 일부 합계 314㎡ 부분에 지점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점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193.2㎡보다 증가된 면적 120.8㎡(이하 '이 사건 증가면적'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2019. 8.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가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17,030,090원, 지방교육세 3,406,01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면적을 부동산 취득 신고 당시의 계획대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지점 설치를 위한 대수선 공사 허가를 받는 등으로 노력했으나, 임차인 등이 과도한 권리금 등을 요구하여 명도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8. 7. 23. 비로소 임차인들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협조를 받고 인도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진단을 실시한 결과 증축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차 설계변경을 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지점을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쟁점 면적 취득의 목적이 지점 설치임에는 변함이 없고,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감면 세액을 상회하는 특별한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며, 투기의 목적과 의도가 없으므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증가면적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중과세 제외 대상인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7. 14.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9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고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인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과 2층의 임대차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아래 표 순번 1, 2 기재 임차목적물 위치에 지점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순번	임차목적물	임차인	임차기간	약정명도일	보증금/월차임 (단위:만원)	비고
1	1층 60㎡	E	2016. 1. 10.~2018. 1. 19.	2017. 10. 15.	3,000[1]/140	
2	1층 132㎡	주식회사 F	2016. 6. 22.~2018. 6. 22.	명도 거부	4400/255	
3	1층 30㎡	G (호프)	2017. 9. 15.~2018. 9. 14.	2018. 7. 31.	1000/53	
4	1층 99㎡	H (순대국)		2018. 6. 30.	3000/250	
5	2층 124㎡	공실		해당사항 없음		
6	2층 198㎡	I (모피)		명도거부	1,500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10. 31. 위 표 순번 1 기재 임

1)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E는 2017. 9. 11. D으로부터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받고, 2017. 10. 15.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차인 E에게 약정 명도일이 지났으니 속히 명도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무렵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3) 원고는 2017. 12. 27. 위 표 순번 2 기재 임차인 주식회사 F에게 지점 설치로 부득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F이 2017. 12. 2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초 임대차 개시일인 2016. 6. 22.부터 5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6. 22.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원고는 2018. 1.경 법무법인 J에게 주식회사 F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구하였고,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대표 K가 개인 명의로 2010. 3. 22.(또는 2007. 3. 19.)[2]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내비게이션 설치 업무를 해오다가 2016. 5. 30.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2016. 6. 2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될 경우, 주식회사 F의 최초 임대차시점을 2010. 3. 22.(또는 2007. 3. 19.)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고, 위 법무법인 J에 명도 협의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등 일체의 소송절차를 위임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통하여 2018. 4. 9. 주식회사 F에게 '2007. 3. 19. 대표이사인 K의 명의로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5년의 임대차기간이 도과하였으니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해당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4) 원고는 2018. 4. 9. 위 표 순번 3, 4 기재 임차인 G, H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2) 위 제안서(갑 제27호증의 1)에는 최초 임대차기간이 2010. 3. 22.부터로 되어있으나, 그 이후 원고가 주식회사 F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갑 제28, 34호증)에는 최초 임대차기간이 2007. 3. 19.부터로 되어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고, 2018. 5.경 H와 합의하여 2018. 6. 30. 무렵 해당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았으며, 2018. 6. 19. G과 합의하여 2018. 7. 31. 무렵 해당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5)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L에게 이 사건 부동산 증축공사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주식회사 L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는데, 당시 예정된 공사는 4층 260㎡ 증축공사, 1 내지 3층 내부 공사, 외벽 대수선 공사 및 엘리베이터 신설 공사 등이었다. 원고는 2018. 2. 26.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외관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예정(공사기간 2018. 3.부터 2018. 12. 31.까지)이라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설계계약 체결이나 관련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6) 원고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해당 임차목적물 132㎡를 인도받지 못하게 되자, 공실로 남아있는 부분 1층 178.85㎡와 2층 109.2㎡(위 표 순번 1, 3, 4, 5 기재 임차목적물 위치)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2018. 6. 19. 주식회사 L과 사이에 설계용역대금 4,400만 원, 기간 2018. 6. 19.부터 2018. 8. 1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증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무렵 설계도서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2018. 7. 23. 1층 임차인 주식회사 F, 3층 임차인 주식회사 M 등으로부터 2018. 8.부터 시작될 리모델링 공사에 협조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으나, 위 임차인들이 실제 퇴실하지 아니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해당 부분 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L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2018. 10.경 수정 설계도서를 받았다.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구조안전도검사 중 1층 중앙에 기둥이 없음을 확인하고 4층 260㎡ 증축공사 및 엘리베이터 신설 공사가 불가능함이 확인됨에 따라 또다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7)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12. 26. 피고로부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건축(대수선) 허가를 받았고, 2019. 2. 9.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까지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2019. 2. 28.에서야 주식회사 L과 이 사건 부동산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금액 835,700,000원)을 체결하였다.

8)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는 2019. 3. 6. 무렵 시작되어 2019. 6. 12. 마쳐졌는데, 현재 원고가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이 사건 부동산 1층 일부와 2층 일부를 합하여 314㎡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추징배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제1호는 B조합가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을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 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취득할 당시 이미 유예기간 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직후부터 임차인들로부터 계약갱신거절, 리모델링공사 협조 요청 등의 통지를 통하여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지점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던 위치를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 주식회사 F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인도를 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내용증명우편을 수차례 보내며 명도협의를 진지하게 이어간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증축과 엘리베이터 설치, 외벽 타일 공사 및 화장실 공사 등을 계획하였으나, 일부 임차인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에 협조하겠다는 합의를 하여주고도 명도를 해주지 않는 등 명도의 어려움과 건물구조의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설계를 두차례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전달받아 잔존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7. 10. 31.을 기준으로, 임차인 주식회사 F의 임대차기간은 2018. 6. 22., 임차인 G의 임대차기간은 2018. 9. 14.이 되어서야 만료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임차인들과 사이에 원활한 인도 합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해당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특히 원고는 증축 등 대규모 수선을 계획하고 있었고, 실제 원고가 2018. 2.경 임차인들에게 리모델링 공사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면서 그 공사기간을 2018. 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로 예정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해결방안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원고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해당 임차목적물을 인도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된 2018. 6. 19.경에서야 비로소 지점 위치를 변경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L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12. 26. 피고로부터 건축(대수선) 허가를 받고, 2019. 2. 28. 위 회사와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1층 임차인 E로부터는 2017. 11.경, 임차인 H로부터는 2018. 6. 30.경, 임차인 G으로부터는 2018. 7. 31.경 각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2018. 7. 31.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이 사건 쟁점 면적에 상응하는 합계 약 190㎡의 면적을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위 인도받은 1층 부분에 지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충분히 이 사건 쟁점 면적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특별히 없었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점,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지점 설치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설계변경은 4층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등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이 사건 쟁점 면적에 지점을 설치하는 문제와는 하등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지점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이나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추가 발생, 지점 설치 면적의 확장이라는 내부적 판단에 따라 그 지점 설치를 연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주장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점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마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사유는 이 사건 쟁점 면적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면적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원고가 한국은행법상의 은행업을 영위하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과연 원고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고 있는 점, '은행업'이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의규정에 따르면,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은행업과 관련하여 한국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이외에도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한국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만을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한국은행법은 제1조 제1항에 그 입법 목적에 관하여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그 이하에 한국은행의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업을 영위하는 다른 은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감면조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B조합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B조합 등에 대한 감면)

② B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B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B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B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redacted]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redacted]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끝.